■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9. 22.>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설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시설	명칭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운영 방법
	사업 개시 예정 연월일
	설치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